사업지구 일반 유의사항

○ 동 대상토지의 공사시행 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각종 인·허가사항(개발 및 실시계획, 지구단위계획, 교통영향평가 등 제 영향평가, 에너지사용계획 등), 관계기관 협의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시행 중 각종 인·허가 변경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내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획이 변경될 경우 이를 수인하여야 함.

○ 공사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, 각종 폐기물, 토사유출 및 현장 진·출입로 등에 대한 관리는 환경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건축부지 진입로 부분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.

○ 배전관로 및 통신관로·지역난방·도시가스등의 관로 인입지점 및 간섭관계는 간선시설설치 시행자인 한전, 한국통신, 삼천리도시가스 등과 별도 협의하여야 함.

○ 공사관련 건축부지 이외에 자재적치, 가건물설치, 토사무단적치, 공사시 발생한 폐건축자재 등을 적치·방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, 임의처분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토지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.

○ 매수인은 계약대금 완납 후 토지를 사용하여야 하며, 토지 사용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사업부 담당자와 '부지인계·인수 절차' 를 진행해야 함.

○ 계약대금 완납 전 토지를 임시사용(지반조사 목적 등) 하고자 할 때에는,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협조요청(공문 발송 필요) 및 담당자 승인을 받아야 함.

○ 계약토지 이외의 시설물 횡단 또는 사용시에는 해당시설물 관리청의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함.

○ 기타 광교지구내 공공시설물 일체의 사용 및 연결, 원상복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청인 지자체와 협의하여야 함.

○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53조,시행령 72조,73조와 관련하여 건축공사시 기준(초기강우5mm적용 저류용량)에 따라 부지내 공사중 비점오염원 저감시설(침사지등)을 설치 운영 하여야 함.

○ 향후, 비점시설(침사지 등 포함) 점검을 위하여 현장확인시 건축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하여 수인해야 함.

○ 기 설치된 휀스 및 수방시설 등 기타시설물은 건축사업장에서 철거 및 이설하여야 하며 이설위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별도 협의해야 함.

○ 우기전 해당사업부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수해방지대책을 수립하고,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.

○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관련 설계도서 등을 참고하여 지반상태 및 기반시설 현황에 대해 확인요망

○ 부지내 암반유무 및 연약지반에 대하여는 토질조사 등을 별도 시행하여 확인 요망됨

○ 우수, 오수, 상수도 관로 등 설계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및 현장상태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하며, 추후 관로 연결공사 시행시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함

장애사항 설명서

공급필지명	용 도
근생1-3-2-가	○ 근린생활시설용지

구 분	장 애 사 항	
옹벽 (계획부지경계)	현황	있음 ☑ 없음 ☐
		보강토 ☐ RC ☐ 기타 ☑
	높이	0m~2m☑ 2m~4m☐ 4m~6m☐ 6m이상☐
	부지내 저촉	없음☑ 0m~1m ☐ 1m~3m ☐ 3m이상 ☐
비탈면(경사도)	현황	있음 ☑ 없음 ☐
		절토 ☐ 성토 ☑
	접한면	1면☑ 2면☐ 3면☐ 4면☐
	높이	0m~5m☑ 5m~10m☐ 10m이상☐
	기울기	1:0.3~1:1.0☐ 1:1.0~1:1.5☑ 1:1.5이상☐
	부지계획경사도	2% ☐ 3% ☐ 4% ☑ 5% ☐
연약지반	존재여부	있음 ☐ 없음 ☑
암반	존재여부	있음 ☐ 없음 ☑
지장물	현황	있음 ☐ 없음 ☑
		가스관 ☐ 우·오수관 ☐ 상수관 ☐ 기타 ☐
		미보상토지 ☐ 가 옥 ☐ 기타 ☐
	기타	
기타사항		-부지내 암반유무 및 연약지반에 대하여는 토질조사 등을 별도 시행하여 실제 현황 확인 요망됨

(※ 상기 장애사항은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소송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고, 자세한 필지현황(형상, 고저, 암반, 법면상태 등)은 계약전 반드시 관련도면 열람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함)